

별지

근질권설정승낙신청서

(이하 "당사" 라고 함)는 2019 년 02 월 25 일 주식회사생보부동산
신탁(이하 "귀사" 라고 함)에 대하여 보유하는 수익권(증서번호 담보2019-02-2450호)에
관하여,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와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위탁자	신탁부동산	
	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7-8, 805동	(정왕동,시흥배곧신도시호반베르디움센트럴파크)

이와 관련하여 질권설정자인 당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귀사의 승낙을 얻고자 합니다.

다 음

1. 위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당사가 귀사에 대하여 보유하는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주식회사 리딩플러스대부를 근질권자로 하는 내용의 수익권근질권 설정에 관한 사항
2. 위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질권설정자인 당사가 우선수익권자로서 귀사에 대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, 근질권자가 우선수익자인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도 직접 신탁목적물의 처분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동의사항

2019 년 03 월 12 일



근질권설정자

근질권설정승낙서

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(이하 "당사" 라고 함)은 위 수익권근질권설정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
다. 이에 당사는 아래 신탁부동산 수익권(증서번호 담보2019-02-2450호)에 대하여 주식회사 리딩
플러스대부를 질권자로 하는 의 수익권근질권설정을 다
음과 같은 조건으로 승낙합니다.

다 음

- 가. 우선수익권의 질권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한 것이므로 근질권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자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.
- 나. 당사는 우선수익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위탁자	신탁부동산	
	경기도 시흥시 배곧3로 27-8, 805동	(정왕동,시흥배곧신도시호반베르디움센트럴파크)

2019 년 03 월 12 일

승낙자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대표이사 김 인 현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4 (대치동, 삼성생명대치타워)

[확정일자]

